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43 발의연월일: 2020. 7. 2.

발 의 자: 김주영·신정훈·권칠승

김정호 · 김홍걸 · 윤영덕

강훈식 · 김승원 · 문진석

송영길·강선우·박영순

의원 (12인)

제안이유

전기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재화 중 하나로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임.

이에 전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전기산업의 토대 마련과 육성에 대해 국가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됨.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따라 전기산업의 생태계 역시급변하고 있음. 이처럼 다양하고 급격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의 체계적인 전기산업정책관리가 요구됨.

그러나 전기는 그것이 갖는 국가적, 사회적 중요성에 비해 현행 법체계상 전기산업발전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조차 전무한 실정임. 「전기사업법」 등 전기와 관련된 다른 법률들이 존재하지만, 전기산업의기반조성이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규정은 미흡하다는 지적임.

「전기사업법」의 경우 전기에 대한 대표적인 법률로 알려져 있지만, 해당 법률은 전기의 산업적 측면보다는 전기사업 허가나 전력시장의 운영 등 실질적인 전기사업의 관리, 그리고 전력수급계획과 같이 전력공급과 수요에 방점을 둔 법률이라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음.

「전기공사업법」이나 「전력기술관리법」의 경우도 각각 전기공사, 전력기술관리와 같이 전문분야를 위주로 한 제한적인 규정이 있을 뿐, 전기산업의 발전이나 육성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을 유도하기에는 부 족한 면이 있다는 평가임.

또한 다른 분야의 자원이나 사회서비스는 기본법을 토대로 한 법체계를 갖춰 해당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음. 물관리, 방송통신, 건설산업, 철도산업 등은 현재 기본법이 마련되어 운영 중인 반면에 국가의 중요 에너지인 전기산업에 대해선 기본법이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임.

전기산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임. 게다가 최근 발전원의 다변화와 ICT 기술과의 융·복합 활성화 등으로 다양한 전 기 관련 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전기산업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전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전기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 및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는 전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안 제4조).
- 다. 정부는 전기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함(안 제5조).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전기산업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산업정책심의회를 둠(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마. 정부는 전기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기 생산·공급·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안 제10조).
-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안 제11조).
- 사. 정부는 전기산업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남북한 간 전기산업분야

- 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아. 전기산업 육성과 신기술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점검·개선하도록 함(안 제16조).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 및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전기산업"이란 전기의 생산·공급·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
 -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
 -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업
 -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조 또는 제공하는 사업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고·등록·승인·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업

- 2. "전기사업자등"이란 제1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3. "전기설비등"이란 「전기공사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전기설비와 그 밖에 전기설비와 일체를 이루거나 결합·연결되어 이를 통제·관리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기계·기구·선로 등의 설비를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전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정적·효율적이고 안전한 전기의 생산·공급·이용을 촉진하며, 전기산업이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전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전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전기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전기의 날 제정 및 운영) ① 정부는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전기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한다.
 - ② 전기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전기산업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전기산업정책의 수립

- 제7조(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기산업육성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전기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3. 전기설비등의 설계·공사·감리·안전관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 4. 전기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 5. 전기산업의 연구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전기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9조에 따른 전기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등, 한국전력거래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전기산업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9조(전기산업정책심의회) ① 기본계획 및 전기산업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산업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2. 전기산업 발전에 관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 3. 전기산업에 관한 중요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4. 남·북한 간의 전기산업 분야 교류 및 협력에 대비한 연구·조사 에 관한 사항
- 5. 전기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전기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정책심의회는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전기산업의 육성

- 제10조(전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정부는 전기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기의 생산·공급·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전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등에 대한 재정· 금융·세제·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전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에 관한 산학협력과 전문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교육·연수·연구·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전기산업의 정보화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 업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 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남북한 간 전기산업 교류·협력) ① 정부는 남북한 간 전기산 업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대비하기 위하여 북한의 전기 산업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

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전기산업의 연구·개발 및 지원) 정부는 전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기관련 공공기관·연구기관·지도기관·대학 및 단체 등에게 전기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전기산업 관련 규제 등의 개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육성 및 신기술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